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88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3년 5월 30일
- 회 부 일 : 2023년 6월 1일

2. 제안이유

-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직원 자녀(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련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중이며,
-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2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아동 보육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며 책임경영과 안전사고 대비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 ('24.1.1.~'26.12.31.)
- 위탁업무
 -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재산, 시설, 장비 등 위탁 재산관리
 - 기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필요사항
- '24년 예산(안) : 274백만원(보육료 수입 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쑥쑥어린이집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 규모 : 지상1층, 연면적 399.45㎡
- 인가일 : '08. 4. 28.



<어린이집 전경>



<실외놀이터>

마. 위탁운영 개요

- 정·현원 : 정원 50명, 현원 31명('23년 5월 기준)
- 교 직 원 : 총 11명(원장 1, 정교사 6, 보조교사 3, 조리사 1)
- 입소아동 : 만1~만5세 영유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인재기획과-3480, '23. 3. 24.)
- 2023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5. 검토의견

가. 동의안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1)에 따라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본 동의안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려는 것임.

인재개발원 어린이집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 규모 : 지상1층, 연면적 399.45㎡
- 지원시설
 - 개원일 : 2008. 5. 1.
 - 근무인원 : 11명(원장 1, 정교사 6, 보조교사 등 3, 조리사 1)
 - 모집정원 : 50명(6학급), 2023년 입소기준

구분	합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교실수	4	-	1	1	1	1
학급수	6	-	2	2	1	1
아동수	50	-	9	12	13	16
교사수	6	-	2	2	1	1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자격조건 :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
- 사업비²⁾: 274,567천원(2024년 안)
 - 인건비 : 221,379천원
 - 급여 : 15,712,833원*12월=188,554천원
 - 운영관리수당(시설장) : 200,000원*12월=2,400천원
 - 보험 : 2,535,422원*12월=30,425천원
 - 관리운영비(전기, 가스비 등) : 29,388천원
 - 전기요금 : 1,387,786원*12개월 = 16,654천원
 - 도시가스 : 338,475원*12개월 = 4,062천원
 - 건물관리비 : 722,658원*12개월 = 8,672천원
 - 운영비 지원 : 23,800천원
 - 친환경급식비 지원: 10,000원*50명*12개월 = 6,000천원
 - 보육교사 연구개발비 : 25,000원*6명*12개월 = 1,800천원
 - 교재 교구비 : 500,000원*12개월 = 6,000천원
 - 기능보장비(에어컨청소, 개·보수비 등) = 10,000천원
- 위·수탁 사무
 -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재산, 시설, 장비 등 위탁 재산관리
 - 기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필요사항

2) 운영비 부담기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의 50% 이상을 부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인재개발원 어린이집의 총세입 중 서울시 민간위탁금 비중은 2022년 기준 51.7% 임.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1)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검토

-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결혼과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통한 고용 안정 촉진의 필요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직원 자녀(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각 기관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으며, 2023년 5월말 기준으로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계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서울연구원
상시근로자수	482	129	77	276
여성근로자수	226	65	23	138
총근로자수	482	129	77	276

※ 인재개발원 근로자 수는 녹지관리(5명)·청소 공무원(9명), 기간제(3명) 종사자를 포함한 수치임.

- 또한, 2023년 5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정원 50명에 현원은 31명으로 62% 수준이며, 구체적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자녀는 없으며 서울연구원(7명)이나 지역주민(21명)의 자녀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예산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3년간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입소자 현황]

- 입소자 현황

구 분	계		만1세	만2세	만3~5세
2023년 (5월 말 기준)	정원	50명	10명	14명	26명
	현원	31명	5명	7명	19명
2022년	정원	50명	10명	14명	26명
	현원	36명	7명	9명	20명
2021년	정원	50명	10명	14명	26명
	현원	39명	9명	14명	16명

- 입소자 부모 소속 실국

구 분	계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데이터센터	기타 (출연기관 등)
2023년 (5월말 기준)	10명	0명	7명	1명	2명
2022년	14명	1명	7명	2명	4명
2021년	11명	1명	5명	2명	3명

※ 기타 : 서울시 출연기관(서울연구원 제외), 자치구 공무원

[최근 3년간 직장어린이집 입소자 중 서울시 직원 이외 입소자 추이]

구 분	2023년 (5월말 기준)	2022년	2021년
계	21명	22명	28명
서초구민	19명	20명	26명
기 타	2명(광진구, 강남구)	2명(성남시, 과천시)	2명(성남시, 용인시)

-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하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을 100분의 30이상으로 규정한 바,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을 제외한 현재 서울시 소속 직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은 정원(50명)기준 2%(데이터 센터 1명)에 불과하여, 법적 설치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인재개발원은 동 시행규칙의 근로자 자녀 비율은 사업주 공동운영의 경우 또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재개발원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p>「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p> <p>제7조제2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영유아보육법」</p> <p>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2)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반면, 민간위탁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 사용자 부담 증가 및 공적인 사명감 부족 등의 단점 또한 있다고 할 것임.
-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왔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직장어린이집 수탁 현황>

위탁기간	수탁기관명	비 고
'08. 5. 1 ~ '10. 12. 31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11. 1. 1 ~ '13. 12. 31	함께하는 보육,	
'13. 12. 31	함께하는 보육 (포기서 제출)	
'14. 1. 2.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14. 2.1 ~ '18.12.31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19. 1. 1.~ '23.12.31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24. 1. 1.~ '26.12.31	선정 예정	

- 인재개발원은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 보다는 보육 및 육아교육에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한편,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 직원들의 실질적인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에는 이용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인재개발원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이를 위해 인재개발원은 보육수요가 있는 인력의 우선배치 등 서울시 직원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지역 주민 자녀 입소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민간위탁 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지도점검 결과 및 종합성과평가(평가인증) 검토

-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2022년 2차례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한 평가인증 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나타남.

※ 인재개발원은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3)에 따라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으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인재개발원은 직장어린이집 시설, 위생, 직원 관리 등에 운영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주의와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22년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상반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관련: 일부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사 공석으로 일용직 근로자 근무하였음(6월) · 한식 조리사 자격증 보유한 조리사 7월 정상 근무 ○ 시설 관련: 적정 <상반기 시설 개·보수 확인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방수공사 실시(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관련: 적정 <하반기 시설 개·보수 확인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 내 가스레인지 교체(7월) - 조리실 내 누전차단기 누수 관련 조치 완료(9월) - 보육실 금 간 유리창 교체 완료(10월)

- 3)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30조)**

- 평가일시 : 2019. 5. 13. ~ 5. 17.
- 평가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평가결과 : A 등급 (A, B, C, D 중 최고 등급)
- 유효기간 : 2019. 07. 15. ~ 2023. 07. 14.
- 평가내용

평가영역	평가지표	영역등급	영역별 종합의견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등 7개 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이 우수한 수준입니다. 표준보육과정을 반영하여 보육과정을 통합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 및 상호작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실내외 공간 구성 등 5개 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이 우수한 수준입니다. 어린이집의 실내외 공간이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정해진 규정 및 방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바람직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안전	급간식, 실내외 공간 청결 등 5개 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건강·안전 영역이 우수한 수준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바람직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원장 리더십, 근무환경 등 4개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개선필요	교직원 영역이 우수한 수준입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교직원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민간위탁 기간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다만, 현재 당해 시설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시 소속직원 자녀의 직장 어린이집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있는 현 상황에서 위탁기간을 3년 (2024.1.1.~ 2026.12.31.)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이태기
------	-----	-------	-----